

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6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-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홍보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 지양
- 홍보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위원 추가 및 기관명칭변경

주요골자

-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명칭변경
- 도의회사무처 담당관 홍보위원추가
-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정하는 “나”등급의 월급여,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,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.

예산현황 : 매년 당초 예산확보.

첨부

1.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3. '93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(발췌) 1부

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2항 3호중“교육위원회”를 “교육청”으로 하고 “도의회 사무처 담당관”을 추가한다.

제9조중 “월531,000원의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%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및 월액수당의 100%에 해당하는 정근수당”을 “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정하는 각종위원회위원 및 간사보수“나”등급의 월급여, 기말수당, 정근수당 및 직무수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	개
<p>제3조(구성)①~②생략</p> <p>3. 도 및 <u>교육위원회의</u> 국 과장</p> <p>제9조(상임위원의 대우)</p> <p>상임위원에게는 <u>월 531,000원의</u> <u>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%</u> <u>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및 월액</u> <u>수당의 100%에 해당하는 정근</u> <u>수당을 지급한다.</u></p>	<p>제2조(구성)①~②생략</p> <p>3. 도 및 <u>교육청</u> 의 국과장, <u>도의</u> <u>회 사무처 담당관</u></p> <p>제9조(상임위원의 대우)</p> <p>상임위원에게는 <u>매년 예산편성</u> <u>지침에 정하는 각종 위원회 위</u> <u>원 및 간사보수 “나”등급의 월</u> <u>급여,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직</u> <u>무수당을 지급한다.</u></p>